



#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산업의 영향과 개선방안

최 은 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kciel21@cerik.re.kr)



을 초 최저임금 상승에 이어 지난 2월 28일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통과시켰다. 즉, 현재까지는 평일 근무 40시간, 평일 연장 근무 12시간, 휴일(토, 일요일) 근무 16시간으로 최대 6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앞으로는 평일 40시간, 연장 근무 12시간으로 최대 5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먼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18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단,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말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정부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정상	연장	휴일	(단위: 주당 시간) 최대
현재	40	12	16	68
개정안	40	12		52

휴일근로를 연장근무에 포함

자료 : 고용노동부

## ■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에 영향 미칠 수 있어

한편, 정부는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예외가 되는 특례 업종으로 5개(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 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를 선정하였는데 건설업의 경우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건설 공사가 표준화 된 기준 없이 경험에 의존한 공기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먼저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300인 이상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이로 인해 공사 기간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인력을 보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해 공사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향후 발주되는 공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한 공사비가 산정될지 여부이다. 일의 양은 그대로인데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그로 인한 간접 노무비 등이 증가하여 공사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되는 ‘근로기준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수당(주휴 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원가에 반영한 공사비 산정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더 큰 문제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설 근로자들이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공사 대부분은 플랜트 공사로 입찰 시 해외 발주기관들은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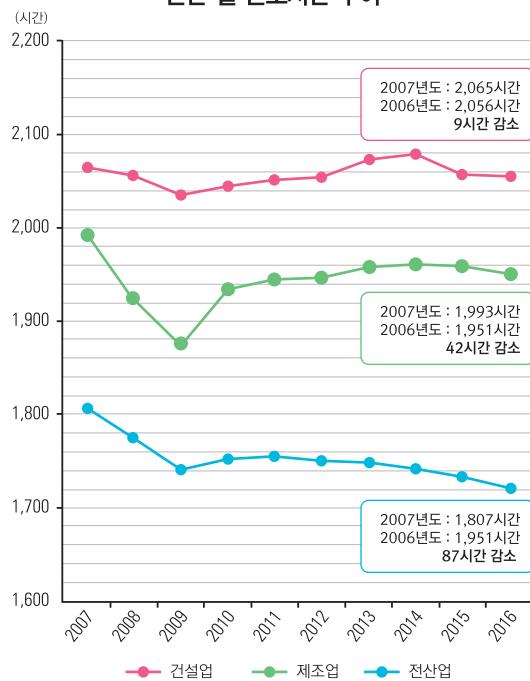
기간을 시공사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은 해외 공사 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져 기업의 수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보수 감소로 근로자들의 해외 현장 근무 기피 경향이 더 커짐으로써 현지 인력의 고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 최근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개정안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는 어떠할까? 국토교통성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간 실 근로시간은 2,065시간, 연간 출근 일수는 25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全) 산업의 연간 실 근로시간이 1,720시간, 연간 출근 일수가 222일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근로시간은 336시간, 출근 일수는 29일이 더 많은 것이다. 한편, 제조업과 비교해 보아도 일본의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은 105시간, 출근 일수는 17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전체 건설업 종사자의 약 64%는 4주 4휴 이하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공사의 경우 종사자의 73.5%가 4주 4휴 이하로 근무해 토목 공사 보다 휴가일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는 지난해인 2017년에 건설업의 근로방식 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노사 간 소위 '36협정'을 맺을

연간 실 근로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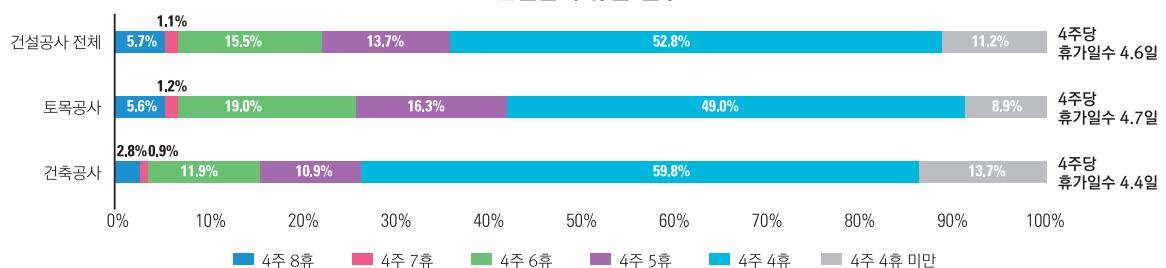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연간 출근 일수의 추이





### 건설업의 휴일 일수



자료: 일간협, 2015년 노동시간 단축 설문

경우(근로시간의 상한 없이 시간 외 노동을 인정하는 협정) 월 45시간, 연 360시간 내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업의 경우 '36협정'의 적용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초과 근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일본은 시간 외 노동에 대해 첫째, 연간 720시간(월 평균 60시간)으로 제한하거나 둘째, 연간 720시간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무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도 넘지 못하는 상한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시간 외 노동을 ① 2~6개월 평균으로 80시간 이

내, ② 월 평균 100시간 미만, ③ 월 45시간이 넘게 추가 근무를 하는 달을 6회로 한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 건설업의 경우 개선안을 5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단기간의 적용보다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기 위한 고민을 하면서 대응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방안으로 적정한 공사 기간의 산정, 적정한 임금 수준의 확보, 주휴 2일 추진 등을 하기 위해 발주자를 포

### 일본의 건설업 시간 외 노동 규제의 재검토

	현행제도	일하는 방법 개혁 실행 계획 (2017년 3월 28일 결정)
원칙	<p><b>〈근로기준법〉</b></p> <p>(1)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2) 36협정을 맺을 경우, 협정에서 정한 시간까지 시간 외 노동 가능            (3) 재해 복구 및 폭설 시 제설 등 피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임시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연장 가능(노동법 33조)</p>	좌동
36협정한도	<p><b>〈후생 노동 장관 고시 : 강제력 없음〉</b></p> <p>(1) 원칙 : 월 45시간, 연 360시간            · 단, 임시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에 상한없음.(년 6개월까지)(특별 조항)            (2) 건설업은 (1)의 적용을 제외함.</p>	<p><b>〈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내용〉</b></p> <p>(1) 원칙 : 월 45시간, 연 360시간            · 연간 근로시간 설정            ① 연 720시간(월 평균 60시간)            ② 연 720시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사무량 증가 시 상한선 설정            a. 2~6달 평균에서 80시간 이내            b. 월 100시간 미만            c. 월 45시간을 넘는 달은 년 6회로 한정            (2) 건설업의 적용            · 5년간은 현행 제도 적용            · 5년 이후 개정된 법칙을 적용. 이때, 재해로 인한 복구 등의 업무가 발생 시 위의 (1) ②의 a,b는 적용되지 않음(노동 기준 법 33조에 의거).</p>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함한 관계자들이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간 외 노동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정비하고 업계 등의 대응 방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단축,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되어야

종합해 보면, 일본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줌으로써 산업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단축도 일본의 경우처럼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즉, 건설업의 경우 현장은 계절·날씨 변화 및 숙련 인력 보유 정도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주당 근로시간이 아닌 탄력적 근로시간의 적용도 도입해볼 만하다. 앞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연간 초과 근로시간 상한선을 두거나 2~6개월의 평균에서 초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혹은 월 45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하는 달을 연 6회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계절적 요인(우천기, 훈설기 등)에 영향을 받는 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주당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3~6개월 단위)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향후 발주되는 공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회계

예규 실비 산정 기준의 보완을 통해 실제 증가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아울러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초과

근로시간 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 정비가 필요하겠다. 이 중 하나로 숙련된 기술자와 기능인력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겠다. 동시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전면적으로 활용한 i-Construction의 대응, 서류 간소화, 중소 건설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으로 현장의 생산성 향상 추진이 필요하겠다.

한편,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장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해외 공사 현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장의 적용 보다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건설업체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실제로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해온 국가들을 살펴보아도 장기간에 걸쳐 제도의 도입을 실행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은 8년간 4시간, 프랑스는 16년간 4시간, 독일은 29년간 5시간을 단축해 왔다. 이에 반해 한국은 4년간 16시간을 단축해 제도의 적용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상대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시간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행되는 제도임에는 노사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칫 산업에게는 부작용을,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국가별 근로시간 단축 시까지 걸린 기간

국가	단축 전 근로시간	단축된 근로시간
일본(8년간 4시간 단축)	44시간*1991년 기준	40시간*1999년 기준
프랑스(16년간 4시간 단축)	39시간*1982년 기준	35시간*1998년 기준
독일(29년간 5시간 단축)	40시간*1966년 기준	35시간*1995년 기준
한국(4년간 16시간 단축)	68시간*2017년 기준	52시간*2021년 기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